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의안 번호	480
----------	-----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서구청장

## 1. 제안사유

-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6,378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을 출연

## 3. 참고사항: 붙임 참조

#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무과 세무관리팀	세무과장	세무관리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 형 식	박 덕 기	오 수 정	663-2376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현황</li> <li>-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li> <li>-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li> <li>·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li> </ul> </li> </ul>				
출자·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6,378천원(구비 6,37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출연금 (구비100%)	5,528	연구원 요구액 6,378	부서 산정액 6,378	증 감 -	850
출자·출연 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li> <li>○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li> <li>○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li> </ul>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li> <li>○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li> <li>○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 감독부서 검토 결과서</li> <li>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 현황, 수지표 등)</li> <li>3. 출연금 사업 계획서</li> </ol>				

#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서

## 1 부서 검토 의견

### < 이사회 결산 감사 >

-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간행물 발간, 지방세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이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단체·행안부 의뢰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간행물 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홍보 분야 실적은 증가했으나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연구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교육은 당초 계획대비 과정과 교육 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현장 실무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세목별 부과 징수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 < 운영실적 평가 >

- 과제 의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의뢰기관의 신뢰도 상승 및 수요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다만 연구과제 선정시 지방재정 분야 공무원 참여도 필요함
- 적절한 시기의 집합교육 추진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평가 개선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쟁송 사건 자문 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전문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등 지방세 불복 사건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3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결산 지방세	2022년 결산 보통세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53,153,778	53,153,778	6,378	6,378	-	850

## 1-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02-2071-2789			
				홈페이지: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20)	14명 (파견 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원 (2023년 8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박일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사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사	이남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사(선임예정)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5.8.29.(예정)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강현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 1-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세무과		출연	6,378천원(구비)

###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 출자 · 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3년: 17,689백만원) 중 12,383백만원(약70%)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 산출기초

- 출연액: 6,378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

###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25,095	4,713	5,035	4,759	5,060	5,528

###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 지방세기본법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